

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 하고자 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
- 예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없거나 압류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해당 차량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공 고 기 간 : 2026. 8. 5.(수) ~ 2026. 8. 19.(수), 15일간

2. 말소예정일: 2026. 9. 3.(목)

3. 공 고 대 상

차량번호	자동차 소유자			말소사유
	성 명	생년월일	사용본거지	
297너1111	유*애	1962.03.21.	부산광역시 금정구	운행정지 명령 위반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(☎051-290-54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5.

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